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다만, 시비로 조성한 주차장과 체육공원에 대한 조성비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건>

- 이번엔 상호 교환코자 하는 재산중 시에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철도청 소유지만 1942년 개서이후 현재까지 용산소방서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용산구 한강로1가 2-89의 1필지 약 1,111평이고,
- 처분코자 하는 시유지는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29 외 5필지의 경의선 선로부지와 중랑구 망우동 244 외 8필지의 중앙선 선로부지, 동작구 대방동 68 외 4필지의 경부선 선로부지로서 총 29필지이며, 약 2,977평입니다.
- 검토결과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1942년 개서이후 57년이 지난 현재까지 용산소방서에서 사용중이며, 이는 국가소유인 철도청 재산으로 무상대부 사용계약을 매년 체결해야만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 서울시 재산중 철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이를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동안 감사원의 철도청 감사시 조속히 상호 교환토록 촉구한 바가 있고, 서울시 지방철도청으로부터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 서울시에 교환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중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에 의거 본 상호 교환코자 하는 변경계획안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동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것들로써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며, 향후 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리한 통찰력으로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로부터 승인된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주택조합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하며, 유수지를 자치구에 양여하고,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철도청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9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1건 - 토 지 : 1필지 3,664.4㎡ (1,109.0평)
- 처분 3건
  - 토 지 : 39필지 157,375.4㎡ (47,605.8평)
  - 건 물 : 2동 2,234.2㎡ (675.8평)

(다음 페이지에 계속)